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2208610)	2025.2.28.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5.7.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 원회 (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 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정부 (2213626)	2025.10.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 의(25.11.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안철수의원 (2214003)	2025.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12.10.)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 등의 신체 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중전의 제14호)중 “채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채납자의”로 한다.

1. 채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6. 족보·일기 등 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9. 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경보 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제4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지방세징수법」 제40조제14호에 따른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압류금지 재산) ----- -----.
1. <u>채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u>	1. <u>채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u>
2. <u>채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u>	2. <u>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u>족보나 그 밖에 채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 서류</u>	6. <u>족보 · 일기 등 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u>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u>채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u>	9. <u>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u>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u>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u>

<u>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u> <u>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u> <u>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u> <u>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u> <u>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u> <u>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u> <u>금액</u> <u><신 설></u> <u><신 설></u>	<u>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u> <u>이에 준하는 물건</u> <u>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u> <u>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u> <u>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u> <u>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u> <u>이에 준하는 물건</u> <u>13. 전문직 종사자·기술자·</u> <u>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u> <u>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u> <u>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u> <u>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u> <u>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u> <u>에 이에 준하는 물건</u> <u>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u> <u>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u> <u>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u> <u>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및 그</u> <u>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u> <u>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u> <u>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u> <u>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u> <u>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u> <u>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u> <u>득하여 등록한 자동차</u> <u>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u>
--	--

11. (생략) <u><신설></u> 14. <u>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u>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u> <u>다음 각 호의 재산은 채납자가 채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u> 1. <u>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u> 2. <u>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u> 3. <u>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u>	<u>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u> 16. (현행 제11호와 같음)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채납자의----- ----- <u><삭제></u>
--	--